

제354회 임시회
2017. 2. 21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북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2월 13일
- 회부일자 : 2017년 2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조직개편(충북여성발전센터 폐지)에 따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- 종전 「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」를 폐지함

4. 주요내용

가. 플라자 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플라자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용 허가

나.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-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·면제·반환 기준

다. 입주기준 및 대부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~제9조)

- 시설 입주 자격, 대부료 납부·반환기준 및 관리비 등 납부

라. 준수사항, 제재 및 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10~제14조)

- 행위제한, 사용 허가 취소 및 퇴거명령,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기준

마. 플라자 시설 관리·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- 필요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운영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개정 사유
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으로 충북여성발전센터(사업소)가 폐지됨에 따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의 시설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종전 「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」를 폐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(시행일 2016. 10. 28) 제정에 따라 기존 충북여성발전센터 사업 및 일부 역할이 충북여성재단으로 이관되고,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으로 도 행정재산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의 관리·운영을 담당해오던 충북여성발전센터(사업소)가 2017년 3월20일자로 폐지되는 바, 충북도에서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(기존 충북여성발전센터 건물 포함)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종전 「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」의 폐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.
- 안 제2조에는 시설물(충북미래여성플라자)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고,
- 안 제4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는 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.
 - 안 [별표1]에 따른 사용료 기준은 종전 「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」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, 이는 공공성과 타 시·도와의 형평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. <참고자료 참조>

- 면제 대상 규정과 관련해, 종전의 「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」에서는 “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” 로 대상을 규정하여 시·군 여성단체들도 면제 대상에 포함 했었는데, 본 조례안에서는 도 단위 여성단체로 면제 대상 범위를 축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※ 면제대상

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	충북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	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. 도 단위 여성 법안·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
▶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51조(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, 양성평등 문화 확산,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안 제6조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, [별표 2]에서 천재지변이나 충북여성플라자(이하 “플라자”로 함)의 사정에 의한 시설 사용 불가 시에는 사용료 전액을,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사용일 7일 전까지는 전액, 5일 전까지는 70% 해당액, 3일 전까지는 50% 해당액, 그리고 사용일 전일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용자가 취소 고지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유인하였음. 이로 인해 사용자의 취소에 의한 운영주체의 피해 금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의 입주 자격과 입주기간을 규정하였음.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르면, 행정재산의 사용

· 수익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,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설 입주기간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▶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

- 안 제10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에 규정된 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 사용, 시설 권 제3자 양도 등에 대한 도지사의 사전 승인 조건을 명시하였고,
- 안 제11조에는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입주자의 퇴거명령에 관한 사항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)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- 안 제12조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3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 등의 사용 완료 및 중단 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4조는 시설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 파손, 훼손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 배상과 책임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은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조문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, 세부적인 기준 마련 및 고지가 필요함.
- 안 제15조는 플라자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부칙 제1조에는 시행일을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예

따라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가 폐지되는 2017년 3월 20일로 규정하였는데, 「지방자치법」상 동 조례안이 3월3일 본회의 의결되면, 의장은 도지사에게 5일 이내 이송하고, 도지사는 20일 이내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3월 20일 이내 공포될 수 있도록 절차적 조치가 요구됨.

- 안 부칙 제2조에는 「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」의 폐지를 규정함.
- 조례의 폐지는 해당 조례의 폐지조례를 제정하는 방법과 관련 조례의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법이 있는 바, 부칙으로 폐지를 규정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함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북미래여성플라자의 시설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종전 「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」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례이며,
-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, 조문 등 제 규정 또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된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참고자료 : 타시도 여성관련 시설 사용료 현황>

시도명	명칭	사용료(원/1h)		기타 공과금(원/1h)
		강당(홀) 등 유사시설	강의실(실습실) 등 유사시설	
17개 시도				
<u>충북</u>	여성발전센터	25,000	10,000	2~30,000
<u>서울</u>	여성플라자	85,000	30,000	-
	여성발전센터	20,000	20,000	-
<u>부산</u>	여성회관	27,000	7,500	15,000
	여성문화회관	30,000	30,000	26,000
<u>인천</u>	여성문화회관	40,000	30,000	-
	여성의광장	40,000	40,000	-
	여성복지관	30,000	15,000	20,000
<u>울산</u>	여성회관	30,000	-	20,000
<u>세종</u>	여성회관	15,000	10,000	-
<u>경기</u>	여성비전센터	40,000	40,000	-
<u>강원</u>	한국여성수련원	125,000	10,000	-
<u>제주</u>	설문대여성문화센터	15,000	10,000	15,000
대구	동부여성문화회관	20,000	10,000	15,000
광주	일가정양립지원본부	25,000	-	20,000
대전	여성가족원	50,000	30,000	50,000
충남	여성정책개발원	-	-	-
전북	여성교육문화센터	100,000	40,000	50,000
전남	여성플라자	25,000	15,000	15,000
경북	여성정책개발원	-	-	-
경남	여성능력개발센터	-	-	-